

# 의정활동보고서

제166회 임시회 (2002. 3. 6 ~ 3. 15)

경 상 특 도 의 회

##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회 교육  
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제166회임사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비회기중에도 지역구에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불철주야 도정수행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최근 중앙정가에서는 4대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민생을 외  
면한 채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얼마전 철도, 가스, 발전 등 3대 공공노조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파업으로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안겨 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철도노조와 가스노조에서는 조기에 파업을 끝내기는 했으나, 발전노조에서는 아직도 파업이 계속되고 있어 자칫 단전되는 사태가 빚어질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불편을 불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파업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정치상황과 공기업의 파업 등 국내적인 악재와 일본경제의 위기설, 미국의 대테러 전쟁 확산 가능성 등 국제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정부와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올해 경제전망치를 살펴보니 다행히도 좋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1월 산업활동 동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올해 5~6%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집행부에서는 올해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점검해 보시고 경제성장의 혜택을 우리 도민들도 누릴 수 있도록 도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도정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의 기회를 통하여 도정질문 하실 의원님께서서는 도정의 추진상황을 소상히 점검하시고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함과 아울러,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준높은 도정질문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시는 의원의 질문이 곧 도민의 목소리임을 인식하시고,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한정된 일정이지만 동료의원님께서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 3. 6

경상북도의회의장 柳 仁 熙

# 차 례

|                  |  |
|------------------|--|
| I. 개 황 .....     |  |
| II. 의사 일정 .....  |  |
| 1. 소 집 .....     |  |
| 2. 회 기 .....     |  |
| 3. 활 동 .....     |  |
| 가. 본회의 .....     |  |
| 나. 위원회 .....     |  |
| III. 의안 처리 ..... |  |
| 1. 본회의 .....     |  |
| 2. 위원회 .....     |  |
| IV. 도정질문 .....   |  |
| V. 민원처리 .....    |  |
| 1. 청 원 .....     |  |
| 2. 진 정 .....     |  |
| 가. 접 수 .....     |  |
| 나. 처 리 .....     |  |

VI. 본회의 보고사항 .....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  
2. 조례공포사항 .....  
3. 기타사항 .....

부 록

조례안 .....

##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166회 임시회는 2002년 3월 6일 개최하여 3월 15일까지 10일간의 회기 동안 4차의 본회의와 연5차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기중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3월 6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의결한 후 휴회하였다.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각종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실시하였다.

3월 13일 오후 2시에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하였으며, 3월 14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도있는 도정질문을 하였다.

3월 15일 오전 11시에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여 경상북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고 제166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 Ⅱ. 의사 일정

### 1. 소 집

가. 집회 구분 : 임시회

나. 소집 요구 : 김응규 의원 외 19인

다. 집회 공고 : 2002. 2. 19

라. 집 회 일 : 2002. 3. 6

### 2. 회 기

가. 회의 기간 : 2002. 3. 6 ~ 3. 15 (10일간)

나. 개의 횟수

○ 본회의 : 4회(누계 120회)

○ 위원회

| 구분 | 계   | 의회<br>운영 | 기 획 | 자치<br>행정 | 교육<br>사회 | 농수산 | 산업<br>관광 | 건 설 | 예결<br>특위 | 양민<br>특위 |
|----|-----|----------|-----|----------|----------|-----|----------|-----|----------|----------|
| 금회 | 5   | 1        |     | 2        | 1        |     | 1        |     |          |          |
| 누계 | 535 | 43       | 79  | 86       | 91       | 66  | 61       | 47  | 61       | 1        |

※ 누계는 제6대 의회 누계

### 3. 활 동

#### 가. 본회의

| 개의일시                 | 심 의 안 건   | 비 고   |
|----------------------|---|---|
| 2002.3.6(수)<br>11:00 | 1. 제166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br>결정의건<br>2.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br>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br>4. 휴회의건   | 제 1 차   |
| 3. 13 (수)<br>14:00   | 1. 도정에관한 질문<br>○ 이광언 (농수산위원, 영천시)<br>○ 이시하 (기획위원, 문경시)  | 제 2 차   |
| 3. 14 (목)<br>11:00   | 1. 도정에관한 질문<br>○ 김종섭 (기획위원, 김천시)<br>○ 박중보 (자치행정, 칠곡군)   | 제 3 차   |
| 3. 15(금)<br>11:00    | 1.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br>2.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br>3.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 및<br>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br>4.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br>조례안<br>5.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br>조례안<br>6.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br>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br>7. 경상북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 및<br>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 | 제 4 차<br>원안가결<br>원안가결<br>원안가결<br>원안가결<br>원안가결<br>원안가결<br>원안가결 |

## 나. 위원회

### <운영위원회>

| 개의일시                 | 심사안건 (내용)  | 비고    |
|----------------------|--|-------|
| 2002.3.6(수)<br>12:30 | <input type="checkbox"/> 업무협약<br>- 제167회임사회 회기협약 | 제 1 차 |

### <기획위원회>

| 개의일시                  | 심사안건 (내용)   | 비고 |
|-----------------------|---|----|
| 2002.3.7(목)<br>~ 8(금) | <input type="checkbox"/> 현지확인<br>- 안동의료원장례식장<br>- 구미임대주택건설사업장 |    |

### <자치행정위원회>

| 개의일시                  | 심사안건 (내용)   | 비고                            |
|-----------------------|---|-------------------------------|
| 2002.3.12(화)<br>11:00 | <input type="checkbox"/> 조례안 심사<br>1. 경상북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br>2. 경상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br>3.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 및<br>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제 1 차<br>원안가결<br>원안가결<br>원안가결 |
| 2002.3.13(수)<br>14:00 | <input type="checkbox"/> 조례안 심사<br>1.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br>2.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제 2 차<br>원안가결<br>원안가결         |

<교육사회위원회>

| 개의일시                  | 심사안건 (내용)   | 비고            |
|-----------------------|---|---------------|
| 2002.3.12(화)<br>11:00 | <input type="checkbox"/> 조례안 심사<br>1.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br>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br>조례안 | 제 1 차<br>원안가결 |

<산업관광위원회>

| 개의일시                  | 심사안건 (내용)  | 비고            |
|-----------------------|--|---------------|
| 2002.3.12(화)<br>11:00 | <input type="checkbox"/> 조례안 심사<br>1. 경상북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br>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안 | 제 1 차<br>원안가결 |

<건설위원회>

| 개의일시                    | 심사안건 (내용)   | 비고 |
|-------------------------|---|----|
| 2002.3.11(월)<br>~ 12(화) | <input type="checkbox"/> 현지확인<br>- 울곡천초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김천)<br>- 우곡교 가설공사(고령) |    |

### Ⅲ. 의안 처리

#### 1. 본회의

| 구 분         | 부의         | 심 의 · 의 결  |            |            |      | 철 회 | 계 류 | 비 고 |
|-------------|------------|------------|------------|------------|------|-----|-----|-----|
|             |            | 계          | 가 결        |            | 부 결  |     |     |     |
|             |            |            | 원 안        | 수 정        |      |     |     |     |
| 계           | 7<br>(391) | 7<br>(391) | 7<br>(334) | (56)       | (1)  |     |     |     |
| 조<br>례<br>안 | 소계         | 7<br>(228) | 7<br>(228) | 7<br>(228) | (36) | (1) |     |     |
|             | 의 회<br>제 안 | (12)       | (12)       | (10)       | (2)  |     |     |     |
|             | 도지사<br>제 출 | 6<br>(163) | 6<br>(163) | 6<br>(133) | (29) | (1) |     |     |
|             | 교육감<br>제 출 | 1<br>(53)  | 1<br>(53)  | 1<br>(48)  | (5)  |     |     |     |
| 예산 안        | (24)       | (24)       | (8)        | (17)       |      |     |     |     |
| 동의·승인       | (65)       | (65)       | (64)       | (1)        |      |     |     |     |
| 건의 안        | (16)       | (16)       | (16)       |            |      |     |     |     |
| 결 의 안       | (17)       | (17)       | (16)       | (1)        |      |     |     |     |
| 기 타 안       | (39)       | (39)       | (38)       | (1)        |      |     |     |     |

- ※ • ( )내는 제6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 2. 위원회

| 위원회   | 회부         | 심 사 · 의 결  |            |      |          |      |      |      |     | 부결  | 철회  | 계류 |
|-------|------------|------------|------------|------|----------|------|------|------|-----|-----|-----|----|
|       |            | 가 결        |            |      |          |      |      |      |     |     |     |    |
|       |            | 계          | 조례         | 예산   | 동의<br>승인 | 건의   | 결의   | 기타   |     |     |     |    |
| 계     | 7<br>(435) | 7<br>(423) | 7<br>(228) | (47) | (77)     | (16) | (17) | (38) | (4) | (4) | (4) |    |
| 의회운영  | (21)       | (19)       | (4)        | (3)  | (4)      |      | (2)  | (6)  | (2) |     |     |    |
| 기 획   | (30)       | (30)       | (14)       | (3)  | (12)     | (1)  |      |      |     |     |     |    |
| 자치행정  | 5<br>(95)  | 5<br>(90)  | 5<br>(70)  | (3)  | (14)     | (1)  | (2)  |      |     | (3) | (2) |    |
| 교육사회  | 1<br>(99)  | 1<br>(97)  | 1<br>(76)  | (5)  | (13)     | (1)  | (1)  | (1)  |     | (1) | (1) |    |
| 농 수 산 | (23)       | (22)       | (11)       | (3)  | (5)      | (3)  |      |      | (1) |     |     |    |
| 산업관광  | 1<br>(46)  | 1<br>(44)  | 1<br>(29)  | (3)  | (9)      | (3)  |      |      | (1) |     | (1) |    |
| 건 설   | (25)       | (25)       | (16)       | (3)  | (3)      | (1)  | (2)  |      |     |     |     |    |
| 특 별   | (37)       | (37)       |            | (24) | (8)      |      |      | (5)  |     |     |     |    |
| 본회의   | (59)       | (59)       | (8)        |      | (9)      | (6)  | (10) | (26) |     |     |     |    |

## IV. 도정질문

### □ 제2차 본회의

#### 이 광 언 의원 (농수산위원회)

##### ○ 도청이전 문제에 대하여

도청이전은 지사님께서 3백만 도민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최근 학계 일부에서는 경북과 대구의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경북의 사항만이 아닌 줄 압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의견교환을 하신 일이 없는지요?

도민들도 통합에 찬성하는 쪽이 많다고 보도가 되는데 도에서 여론조사를 해 본 일이 있는지요?

현재 도청이전추진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위원회가 몇 번이나 개최되었으며, 어떤 의견들이 도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지역 균형개발에 대하여

경산시 하양읍과 영천시 신녕면, 군위군간의 도로 확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읍 소재지에는 정주권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읍 소재지가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팔공산도립공원 은해사 관광지구개발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20년 간 손 한번 대지 않는 이유, 이는 본 의원이 본 안건에 대해서 네 번째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호읍 오계리, 원기리 금호공단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합니다. 언제쯤 정비할 것인지, 그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강변 고속화도로는 언제쯤 착공하며,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은 얼마며, 대구시에서 반대한다는 보도가 있고 한데 사실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금호~대창간 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여 현재 도로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정비확장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금호읍과 청통면 우천리까지 도로, 속칭 풍낙선입니다. 계획의 절반만 완공되었는데 언제쯤 준공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영천시 금호읍의 소도읍가꾸기사업을 계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농지관리에 대하여

농업진흥지구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가주택의 건립이 가능한 줄로 아는데 시·군에서 농지전용을 불허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농지보호지구에 대해서 어떤 보호대책이 있으며, 농지관리를 농지의 주인인 농민에게 맡길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하여

읍·면의 부읍면장제도를 부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읍·면·동의 이장 및 통장의 보수는 적정하다고 보는지, 그 보수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위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올해 소방공무원의 충원계획과 방법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공무원인들 열심히 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겠습니까마는 정말 소방공무원은 인력부족으로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 ○ 불우이웃시설 현황에 대하여

불우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형태별로 밝혀 주시고, 불우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에 대하여 일일 식비는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냉난방시설 및 목욕시설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의 불만은 없는지와 만약 불만을 가질 요인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서면으로 전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산불방지에 대하여

현재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발화자에 대하여 의법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는 어떤지요?

2002년도, 금년의 발생건수와 실화자의 의법조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국·공유지를 사용자에게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요?

국·공유지의 현황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와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2002년도 교원수급에 대하여

도내에는 사범학교가 없어 대구에 있는 사범학교 졸업생이 대구시내에 먼저 성적순으로 임용되고 나머지가 우리 도에 임용되는 것이 아닌지 밝혀 주시고, 우리 도에는 사범학교 설립계획이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OECD 수준의 학급편성에 대해서 현재 교실의 증축 및 신축 추진현황은 어떠하며, 신학기 수업에 지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직원들의 다단계 판매에 대하여

최근 들어 교직원 중에서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는 교직원이 많은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는 생계비에 충당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다단계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지, 교육감님께서서는 어떤 이유에서 다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는지, 있다면 그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무원이 생계 충당하는 방법으로 농사나 축산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흡연 비율에 대하여

도내 교직원과 학생들의 흡연현황을 밝혀 주시고, 그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과 금연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학교의 교직원들이 담배를 피는 모양새라든가 품이 너무 좋아서 담배를 처음 시작한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담배를 멋지게 피울 수 있는 것이 맞는지 없는 것이 맞는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와 근절대책을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과 학부모 간의 생각의 잘못으로 교권의 침해가 되는 일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학교 급식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급식에 있어 교육감님께서서는 우수식료품이 납품된다고 보는지 밝혀 주시고, 학교별 급식의 수급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동구입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고등학교 장학제도에 대하여

학생을 유치할 경우에는 장학혜택을 주기로 해 놓고 진학 후에는 학교 성적에 의해 장학생을 선발한다며 장학혜택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제재방법과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폐교한 학교의 관리에 대하여

폐교 후 관리 소홀로 인하여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폐교에 대한 관리방안과 교육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의 연고지 근무에 대하여

부부교사의 경우는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부모님을 모셔야 할 경우 부모님이 계시는 인근학교로 전보해 줄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 건강하시고 모두 뜻한 바 소원을 다 이루셔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도 생각하시는 뜻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시 하 의원 (기획위원회)

### ○ 실업자 대책에 관하여

IMF사태를 맞으면서 '98년4월에는 실업자가 140만명에 이르렀고 실직, 노숙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가장 많았을 때에는 서울역 주변 등 서울시내에만 해도 3,000여명의 노숙자가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동안 경기회복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숙자 대책으로 현저히 감소는 되었으나 아직도 상당수가 거리를 방황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노숙자 수가 서울에 3천 여명이고 전국으로는 6천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도내의 노숙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는지, 파악한 적이 있다면 노숙자 수는 얼마나 되며, 이들에 대한 도 차원의 구체적인 장·단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월17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금년 1월말 현재 국내 총 실업자 수는 81만 여명으로 실업률이 3.7%로 높아져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보면 5만 여명이나 증가하였으며, 매년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3월에는 실업자 수가 90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실업자 수와 실업자 실업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청년실업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명선거 대책에 대하여

근대 우리나라에서 선거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미군정법령 제 175호로 공포된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하여 실시된 '48년5월 제헌국회의원 선거였으며, 지방선거는 '52년4월 제1대 도·시·읍·면 의원 선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선거역사는 선진국의 100년, 200년에 비하면 일천한 역사이지만 54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거 때만 되면 학연, 지연, 혈연으로 대한민국의 지도가 갈기갈기 찢기는가 하면 금권, 관권 등 부정선거 시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선거문화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금년 6월13일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는 정말로 돈 안 들고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경쟁 속에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유권자들도 행정능력과 양심과 자질을 보고 표를 찍는 선거풍토가 정착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금년에 치루어질 4대 지방선거는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가 조성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하천부지 내 편입 사유지 보상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84년도 말 이전에 국가 및 지방 1급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가운데 '86년부터 '90년까지 보상금 청구를 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동기간 내에 보상청구를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2002년까지 청구하면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국가 또는 지방 1급 하천부지에 포함된 사유지와 보상액은 얼마나 되며, 지난해 말까지 보상실적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하천부지에 사유지가 편입된 많은 도민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하천부지에 포함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에서 이를 조사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해 주는 것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극히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은 사유지가 국가 및 지방 1급 하천에 편입되었거나 지방 2급 하천에 편입되었거나 다같이 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데 국가 1급 지방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지방 2급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방 2급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보상계획은 어떠한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문경을 비롯한 북부지역 개발에 관하여

문경시를 비롯한 북부지역 11개 시·군은 북부지역개발촉진지구사업,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에 다같이 포함되어 있고 이외에도 특히 문경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따라서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연차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의근 지사님께서 낙후된 북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도로망은 팔복하리 만큼 크게 개선되어 주민들의 교통불편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업은 부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거나 미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북부지역개발촉진지구사업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총 4조6,82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말까지 겨우 3,146억원이 투자되었고, 문경 폐광진흥지구사업도 또한 '96년부터 2005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2001년 말까지 57%인 567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2조2,66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까지 950억원만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개 개발사업이 발표될 당시 북부지역 많은 주민들은 지역개발을 크게 기대하였으나 현재 추진이 부진하여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사업추진 전망과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 흙수로 개보수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유네스코와 세계기상기구에서 물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아마 물을 가장 흥청망청 쓰는 국가도 우리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을 아껴쓰는데는 국민적인 의식의 개선과 함께 물을 아껴쓸 수 있는 시설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농촌지역의 수로는 대부분 흙수로 되어 있어서 많은 양의 물이 도수 과정에서 낭비되고 실제로

영농에 쓰는 물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물 부족에 대비하여 흙으로 된 수로를 시멘트로 만드는 등 개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말 현재 흙수로 현황과 개보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개보수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쌀 증산에 대하여

지금까지 증산 위주로 쌀 생산을 해 오다가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쌀값폭락으로 쌀 생산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쌀 생산을 고품질 위주로 특용작물 또는 과수재배로 전환한다고 하나 그리 쉽게 이를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노령화된 농촌에 몇 년 후에는 반드시 휴경지가 방치되어 어려운 농촌이 더욱 어렵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농촌 현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산산업에 대하여

WTO 대응전략으로 도내 축산산업 대응전략이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관하여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은 사업비 100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2,310평 규모로 '99년3월에 착공하여 2001년12월31일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의 사업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학생 수 감축에 대하여

당초 2004년을 목표로 했던 초·중·고 학생 수 감축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지난해 7월 교육부가 학급당 학생 수를 고교는 올해부터 35명으로 감축하면서 교실 증축공사에 고등학교 360여 학교가 아직도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부작용을 내면서 학생 수를 감축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강행하면 졸작이 되고 만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일정을 신축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 초등학교 체육관과 강당 보유현황에 대하여

본 의원이 경상북도 초등학교에 체육관 및 강당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포항이 강당이 20개, 체육관 2개, 김천에 강당이 4개, 체육관이 2개, 경산에 강당이 4개, 체육관이 3개, 청도가 강당이 2개, 체육관이 2개, 울릉도가 강당 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경시만 '66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어주신 문경초등학교에 강당 1개가 전부입니다. 청도가 강당 2개, 체육관 2개를 보유하고 있고 울릉도가 강당 3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체육관 및 강당 예산분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이 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해 보니 졸업생만 교실에 앉아서 졸업식을 하고 축하를 하러 온 학부모들은 모두 복도에서 추위에 떨면서 졸업식을 참관하는 현장을 보았을 때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초·중·고등학교에 강당 및 체육관이 필요한 학교가 몇 학교나 되며, 앞으로 해소책은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점촌고등학교에 다목적교실 신축에 관하여

본 의원은 점촌고등학교는 공립학교로써 성공한 표본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2001학년도 서울대학교 입학생이 5명 중 3명이 장학생으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였고 포항고등학교에 이어 경상북도에서 서울대학생 배출 2위에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 공립학교에 다목적교실이 하나 없어서 입학식 및 졸업식 때 막대한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수 고교 시설 미흡으로 불편함이 있다면 우수학생 유치에도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점촌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제3차 본회의

김 종 섭 의원 (기획위원회)

### ○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벌써 10년이 지나 이제 뿌리깊게 정착되었어야 했음에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몇억원짜리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지사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예산을 부탁해야 하고 국회의원이 동원돼야 하는 등 비참한 현실이 아닙니까?

이러한 비참한 현실은 결국 자주재원 확충이 되지 않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 돈을 쥐고 있는 중앙부처에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안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러한 현상은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몇십년이 걸린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상북도의 재정규모는 민선지사 선거가 실시된 '95년도에는 1조3,179억원이었으며 6년이 지난 금년도는 2조2,649억원으로 규모 면에서는 172%나 신장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95년도에 30.4%이던 것이 금년도는 30%로 오히려 0.4%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재정규모가 약 2배 가까이 신장한 것은 국가재정력의 신장과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은 물론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그간 중앙지원금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어온 이의근 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6년 전보다도 떨어진 것은 그 동안 우리 도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는 긍정적인 점도 있으나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제도 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세는 주세, 소득세 등 세원이 풍부하고 징수하기가 편리한 것이 대부분이고 지방세는 경기에 따라 세원과 징수가 불투명한 취득세, 등록세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IMF 사태를 거치면서 지방재정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경북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울진과 월성원자력발전소, 안동댐, 임하댐 등 많은 발전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관광객들에게는 관광세, 원전 소비량에 따라서는 원자력 발전지역개발세, 그리고 댐의 물이용에 대한 댐 수리이용세 등을 징수한다면 열악한 재정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간 이러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도 단위에서 추진한 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우리 경상북도는 전통적인 농도로서 금년 1월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1년말 현재 농어업 종사 인구가 2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업은 WTO체제 출범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제 경쟁력 면에서 볼 때 앞으로 획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생존조차 힘든 지경에 있습니다. 제조업 또한 98.7%가 중소기업으로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상북도가 세계 속에 우뚝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산업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세계 각 국에서 BT, IT, ET, NT 등 신산업 육성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신산업 육성과 산업고도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천지역의 관광개발에 대하여

예로부터 김천은 교통의 중심지이고 경북의 관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에도 김천은 경부·중부내륙 고속도로 등 많은 고속도로와 국도, 철도가 통과하는 물류 및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증산면 지역의 청암사, 수도암 계곡과 부항면, 대덕면 일대는 여름철이면 하루에도 대구, 서울 등 전국 각처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화장실, 급수시설 등 관광 수용시설이 극히 미흡하여 즐거워야 할 관광이 짜증스럽다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김천지역의 체계적인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전국의 사찰 가운데서 규모가 가장 큰 직지사과 개발계획 중인 부항온천, 청암사와 수도암이 있는 수도산과 대덕면 일대, 그리고 경북, 충북, 전북 3도가 접하는 삼도봉을 전라북도 무주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광개발이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발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월드컵 축구대회와 U대회 등에 관하여

금년부터 내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월드컵 축구대회 등 많은 국제행사가 열릴 계획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세계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는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금년 5월 31일부터 6월30일까지 대구를 비롯한 전국 10개 도시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또 금년 9월29일부터 10월14일까지는 부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며, 내년 8월2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대구에서 U대회가 열릴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국제행사와 관련해서 경상북도에서 지원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도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농산물 도매시장에 관하여

경상북도에서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실의에 빠진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물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위치선정이 부적절했다는 것이며, 앞으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도내 서부지역에는 구미시 고아읍에 328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2만5,000평, 건평 7,000평 규모의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하여

지난해에는 약 5만1,000톤에 467억원이 거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미시보다는 농산물 생산량이 많고 교통의 요충지인 김천이 최적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은 구미와 같은 대규모 농산물 도매시장이 없음에도 지난 한 해 동안 김천농협 공판장과 김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금액은 388억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구미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것을 제외하고도 김천에서 팔린 것이 388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라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등 어느 지역과도 교통망이 쉽게 연결되고 물류·교통의 중심지인 김천지역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 <보충질문>

#### ○ 도매시장에 대해서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안동에 5년전에 도매시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710억씩 팔립니다. 김천은 생산지입니다. 6,000억에 가까운 자원이 있습니다. 구미 전자회사가 잘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부합되는 쪽에, 구미에 하필 도매시장이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매시장은 소비자가 있으면 있어야 됩니다. 35만, 나중에 50만을 내다보더라도 2,000평만 하면 구미가 필요한 양은 충분히 도매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생산지입니다. 바다에 고기가 나면 그 자리에서 경매를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보는 눈하고 저희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김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농산물을 6,000 억이나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단위 농산물시장을 만들었을 때 농사를 지어 가지고 서울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서울이나 부산이나 모든 도시에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김천이 전국에 3시간 거리입니다. 전북에서 와도 3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생산지에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냐, 시장이다 이겁니다.

안동이나 상주나 김천이나 대구하고 거리가 가까운데 한 시간 거리로 다 좁혀놨습니다. 거리가 좁아서 좋지마는 지금 매천시장이나 팔달시장이나 가 보시면 수천억을 팔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경상도에서 다 가져가는 겁니다. 농사는 김천에서 채소농사를 짓는데 물건 가지로는 어디로 갑니까? 대구 매천시장이나 팔달시장에 갑니다.

어제 안 그래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대구하고 경북하고 합칠 것이냐고 물었는데, 대구에 복잡한데 왜 채소를 가져와서 팔도록 합니까? 북부지역, 서부지역 나눠 가지고 우리 지역에 수만평의 시장이 생기면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것은 거기 와서 사갈 수 있도록 할 수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알고 자리 선정을 하고 지역의 교통을 복잡하도록 만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도에서 생산하는 것은 우리 도에 어느 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팔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 정부, 중앙 정부’ 얘기하는데 우리는 사실 있어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

정부가 우리 농촌의 사정을 어떻게 압니까? 국회의원도 돼 가지고 추풍령만 넘어가면 서울사람 됩니다. 농촌은 농촌이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 김천 같은 데다가 적어도 2만평 이상의 농산물시장을 지어놨으면 1년내 하면 1,000억을 팔면 1,000명이 먹고 살고 2,000억을 팔면 2,000명이 먹고 산다는 얘깁니다.

제가 안동에 농산물시장을 지었을 때 갔었습니다. 농산물시장이 그때 100억 들었는데, 도비·국비 50% 시비 50%를 들여 가지고 지었는데, 이 돈을 들여서 왜 여기다가 짓느냐 하니까 16년 후면 반드시 수확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천 같은 데는 바로 지으면 그해에 1,000억을 팔 수 있습니다. 구미에 작년도에 460억 팔았습니다. 기술자가 누굽니까? 다 김천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김천에는 그런 시장을 만들지를 못해서 6,000억이 생산되는 것을, 그런데 거기 끌고 가면 거기서 물 밥 간에 사먹고 농약 사 가지고 집으로 다 들어가는데 김천시장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특성화로 만들어 가자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줘야 되는 것이지, 과장하고 계장하고 아무리 제가 이야기해도 “중앙 부처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은 더더욱 다른 데서 옮겨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고 우리 도가 어떻게 하면 관광 내지는 시장을 대구로 안 뺏기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대구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겠느냐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박 중 보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 ○ 6.13 4대 지방선거에 대하여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인이나 정치인이나 하는 데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과거 중앙집권시대 때 최고 정책결정자의 정책의지를 일선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임명직 공무원은 행정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의 시장·군수·구청장, 지사는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므로 그 지위와 권한이 한시적으로 보장되는 선거직 공무원은 정치인이다,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인은 단체장의 임명을 받아서 단체장의 정책적 의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부단체장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가오는 6·13선거에 대한 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6·13선거에 이의근 지사님께서서는 출마하시는지 이 자리에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도민이 원한다면 출마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너무 막연합니다. 도민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소수일 수도 있고 또 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선거란 것은 무엇보다도 본인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전제되어야만 승부를 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광역선거를 치르려면 정당공천이 필수적입니다. 정당공천에는 지명과 합의추대, 그리고 경선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어느 것을 선호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경선을 했을 경우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된다면 다행이겠습니까마는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는 지도자라는 인상을 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사의 연세가 60대 중반입니다.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수십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서 축적된 노하우와 경륜이 도정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격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이지사께서 이번에 3선에 당선되면 거의 10년 이상 집권하게 됩니다. 10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장기집권입니다. 장기집권은 필연적으로 부패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임기중반쯤 되게 되면 도정의 레임덕 현상이 초래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의근 지사께서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몇몇을 심어주고 지원하고 당선시켜서 경상북도 도정을 친정체제로 만든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만일 사실이라면 어느 지역에 누구를 지원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사실이 아니라면 모른다고 하시지 말고 확실히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에 대하여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여야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공천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과거에 야당이었을 때

공천주자고 했습니다. 현재 야당인 한나라당은 과거에 여당이었을 때 공천을 주지 말자고 했습니다. 여당은 공천을 주지 말자고 하고 야당은 공천을 주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여당은 정치자금이 풍족하고 야당은 정치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천헌금이 우리 서민들이 평생을 모아도 만질 수 없는 거금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30일 전국 시장·군수 회의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공천을 배제해야 된다고, 그 첫째 이유가 공천헌금으로 인해서 부정부패의 요인이 된다고, 당선되고 나서 본전 뽑으려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다가 사법처리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한없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권력기관의 공천이 지방자치단체를 종속시키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지방자치제를 연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기업주와 노동조합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기업주는 노동조합 만드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노동조합이 결성된다 할지라도 노조위원장이 기업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선임되기 위해서 뒤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의용노조라고 합니다.

중앙의 권력기관은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지방자치제 실시 자체를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노태우 6·29 민주화선언 때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원들에게 겸직 금지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멍에를 씌워서 지방정치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단체장에 대해서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중앙권력기관에 종속시키고 통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중 정부의 정책 실패와 지방자치단체 제도에 대하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을 부분적이고 지역적으로 실험을 해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수정 보완해서 다음에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약품 남용하지 말고 저렴한 수가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약분업 내지는 의료보험 통합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갑자기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김대중 정부의 정책이 실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실패가 지방자치단체에는 책임이 없느냐, 저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정부의 100대 과제 중에서 하나를 보게 되면 읍면동을 폐지하고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을 전환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실험을 했습니다. 경상북도 세 군대를 비롯해 가지고 전국에 서른 한 군대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많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경상북도에서도 이것이 현실성이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5월에 행정자치부장관이 대구·경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확대실시 하라고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이 맞다고 정당화시키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저는 대단히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단체장 중에서 상당수가 과거 중앙집권시대 때 행정관료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중앙정부라 하게 되면 거의 경외감을 느낍니다. 청와

대라 하면 성역화 된 곳으로 무서워합니다. 따라서 청와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이것을 거부했다가는 신상에 재미가 없고 또 예산에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가 발전되어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왜곡교과서 문제가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역사 만들기’ 모임에서 발간한 왜곡 역사교과서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채택되고 있는 것은 반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도치키현에서, 도야마 문부상이, 우리나라 같으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입니다. 이걸 이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에서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단호한 의지가 있음으로 해서 일본의 어린이들은 올바른 역사를 배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귀감으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 월드컵 축구 경기와 식용(개고기) 문화에 대하여

오는 5월30일부터 6월말까지 우리나라에는 월드컵축구경기가 있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에서 축구 팬들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축구경기를 볼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먹거리, 볼거리를 찾아 나설 겁니다.

그런데 서구인들이 가족으로 생각하는 그 견공을 우리나라에서는 보신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식용문화 때문에 지난 88 올림픽 때 중앙정부에서는 길거리에 있는 보신탄 간판을 내리고 또 집을 전부 소계(小憩)시키라고 했습니다.

만일 이번에 또 그러한 지시가 내렸을 때 우리 이의근지사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장례문제에 대하여

경상북도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나 전 면적의 73%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쓸모있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1년에 대구·경북을 합쳐 가지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약 한 2만명정도 됩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아직까지 매장을 해서 산소를 가꾸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산이 산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걱정하는 뜻있는 선각자들이 화장문화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래문화는 어떤 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의 지도자급들이 솔선수범 해야 됩니다. 우리 이의근지사는 공인중에 공인일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 이의근지사께서 무병장수해서 나중에 타계한 후 그 장례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초등학교 정·후문쪽 소도에 대한 인도개설에 대하여

우리의 새싹과 어린이들은 우리 어른들의 거울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야 만이 우리의 미래가 또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정·후문쪽으로 어린이들이 등교할 때에 인도가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른들의 무관심한 방치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들의 꿈이 깨어진다면 이것은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지사에게 바라건대 초등학교 정문·후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1km전방부터 필히 인도를 개설할 것을 또 의무화하고 제도화 할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6월13일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V. 민원처리

### 1. 청 원

| 구 분 | 접 수 |     |     | 처 리 | 처리중 |
|-----|-----|-----|-----|-----|-----|
|     | 계   | 이 월 | 금 회 |     |     |
| 금 회 |     |     |     |     |     |
| 누 계 | 4   | -   | 4   | 4   |     |

※ 누계는 제6대 의회 실적

### 2. 진 정

#### 가. 접 수

| 위원회별  | 계          | 행정        | 사회<br>문화 | 교통   | 건설        | 교육   | 경제   | 환경   | 농어업  | 기타   |
|-------|------------|-----------|----------|------|-----------|------|------|------|------|------|
| 계     | 4<br>(239) | 3<br>(40) | (12)     | (17) | 1<br>(72) | (12) | (15) | (20) | (27) | (24) |
| 의회운영  |            |           |          |      |           |      |      |      |      |      |
| 기 획   | (3)        | (1)       |          |      | (2)       |      |      |      |      |      |
| 자치행정  | 2<br>(37)  | 2<br>(29) | (1)      |      | (3)       |      | (1)  |      |      | (3)  |
| 교육사회  | (39)       |           | (3)      | (1)  | (2)       | (12) |      | (12) | (1)  | (8)  |
| 농 수 산 | 1<br>(41)  | 1<br>(2)  | (1)      | (6)  | (9)       |      | (1)  |      | (20) | (2)  |
| 산업관광  | (40)       | (3)       | (5)      | (5)  | (4)       |      | (11) | (8)  | (2)  | (2)  |
| 건 설   | 1<br>(74)  | (5)       | (2)      | (5)  | 1<br>(52) |      | (2)  |      | (4)  | (4)  |
| 특별위원회 | (5)        |           |          |      |           |      |      |      |      | (5)  |

※ ( )안은 6대 의원 누계

나. 처 리

| 위원회별  | 처 리        |            |     |     |       | 처리중 |
|-------|------------|------------|-----|-----|-------|-----|
|       | 계          | 처 리        | 불수리 | 취 하 | 타기관이송 |     |
| 계     | 4<br>(239) | 4<br>(237) | (2) |     |       |     |
| 의회운영  |            |            |     |     |       |     |
| 기 획   | (3)        | (3)        |     |     |       |     |
| 자치행정  | 2<br>(37)  | 2<br>(36)  | (1) |     |       |     |
| 교육사회  | (39)       | (38)       | (1) |     |       |     |
| 농 수 산 | 1<br>(41)  | 1<br>(41)  |     |     |       |     |
| 산업관광  | (40)       | (40)       |     |     |       |     |
| 건 설   | 1<br>(74)  | 1<br>(74)  |     |     |       |     |
| 특별위원회 | (5)        | (5)        |     |     |       |     |

※ ( )안은 제6대 의회 누계

## VI. 본회의 보고사항

###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 제 출 자<br>(제출일)           | 의 안 명                                   | 소관위원회<br>(회부일)        |
|--------------------------|---|-----------------------|
| 경상북도지사<br>(2002. 2. 25)  |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자치행정<br>(2002. 2. 27) |
| 경상북도지사<br>(2002. 2. 25)  |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자치행정<br>(2002. 2. 27) |
| 경상북도지사<br>(2002. 2. 25)  |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br>조례중개정조례안          | 자치행정<br>(2002. 2. 27) |
| 경상북도지사<br>(2002. 2. 27)  | 경상북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br>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 | 산업관광<br>(2002. 2. 27) |
| 경상북도지사<br>(2002. 3. 4)   |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자치행정<br>(2002. 3. 5)  |
| 경상북도지사<br>(2002. 3. 4)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자치행정<br>(2002. 3. 5)  |
| 경상북도교육감<br>(2002. 2. 27) |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br>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교육사회<br>(2002. 2. 27) |

## 2. 조례공포사항

| 이 송 일      | 이 송 처       | 건 명              | 공 포 일       |
|------------|-------------|------------------|-------------|
| 2001. 2. 5 | 경상북도<br>교육감 |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 2002. 2. 21 |

## 3. 기타사항

### ○ 경북신용보증재단 동부출장소 개소식

- 일 시 : 2002. 2. 6(수) 11:00
- 장 소 : 포항시 해도동 대구은행2층
- 참 석 : 이상천 부의장

### ○ 북경시 소년궁 학생방문단 접견

- 일 시 : 2002. 2. 8(금) 14:00
- 장 소 : 포항 오천초등학교
- 참 석 : 이상천 부의장(축사)

### ○ 경상북도 통합방위 지방회의

- 일 시 : 2002. 2. 19(화) 14:00
- 장 소 : 영천시민회관
- 참 석 : 류인희 의장, 이광언 의원, 이종철 의원

○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 일 시 : 2002. 2. 20(수) 16:00
- 장 소 : 대구광역시의회
- 참 석 : 김창언 운영위원장

○ 경도대학 학위수여식

- 일 시 : 2002. 2. 22(금) 11:00
- 장 소 : 경도대학교
- 참 석 : 류인회 의장(축사)

○ 안동지역 도기관 합동청사 건립 기공식

- 일 시 : 2002. 2. 22(금) 14:00
- 장 소 :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 참 석 : 류인회 의장(축사)

○ 제83주년 3·1절 기념행사

- 일 시 : 2002. 3. 1(금) 10:00
- 장 소 : 경주 서라벌문화회관
- 참 석 : 이상천 부의장(만세삼창), 김진목, 이상호 의원

# 부 록

- 조 례 안 : 7건

□ 조례안 : 7건

-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안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류 인 희

2002. 3. 15

경상북도조례 제 호

###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레저세

제53조 내지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
3.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영이 정하는 것.

제54조(납세의무자)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하 이절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과세대상사업장(이하 이 절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도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5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으로 한다.

②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경륜·경정 또는 경마종료일”을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로 하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을 “경륜장 등의 소재지”로 한다.

제57조 본문중 “경주·경마때마다 경륜·경정 또는 경마에 대한”을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으로 하고, 제1호중 “승자·경마투표권”을 “투표권”으로 하며, 제2호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경주·마권세액”을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레저세액”으로 한다.

제58조 본문중 “경주·마권세액”을 “레저세액”으로 한다.

제66조제1호중 “매년 5월 1일”을 “매년 6월 1일”로 하고, 제2호중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을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한다.

제100조 본문중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2호중 “경주·마권세액”을 “레저세액”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중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류 인 희

2002. 3. 15

경상북도조례 제 호

##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경상북도세”를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세”로 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가유공자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가 제2조의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①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또는 한센정착농원 대표자가 한센환자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한센복지협회 기타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0조 중 “할부판매 등”을 “할부매입하는 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임대사업자(이하 이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를 “임

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5조 본문중 “정하는”을 “정한 자가 취득하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한다.

제26조 중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를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로 한다.

제2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류 인 희

2002. 3. 15

경상북도조례 제 호

###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 연5% ”를 “ 연3% ”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이율을 적용한다.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류 인 희

2002. 3. 15

경상북도조례 제 호

###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17호 및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경북첨단문화산업의 추진·기획
18. 문화산업단지 조성 및 연구·개발사업

제10조 중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연안항 및 지방어항관리

제13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유도선관리

제18조의 제목“(농산물원종장, 잠사곤충사업장, 생물자원연구소, 특화작목시험장)”을“(농산물원종장, 잠사곤충사업장, 생물자원연구소, 신물질연구소, 특화작목시험장)”으로 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을 제4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기능성 및 천연물질 개발·이용·연구를 위하여 신물질연구소를 둔다.

제4항(현행 제3항) 중 “의성약초시험장, 성주과채류시험장”을 “성주과채류시험장”으로 하고, 제5항(현행 제4항) 중 “생물자원연구소”를 “생물자원연구소, 신물질연구소”로 하며,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농산물원종장, 잠사곤충사업장, 생물자원연구소, 신물질연구소,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 및 위치(제18조 제5항 관련)

| 명 칭                             |            | 위 치                 | 비 고 |
|---------------------------------|------------|---------------------|-----|
| 농 산 물 원 종 장                     |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859-1  |     |
| 잠 사 곤 충 사 업 장                   |            | 경상북도 상주시 낙양동 123-29 |     |
| 생 물 자 원 연 구 소                   |            |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도천리    |     |
| 신 물 질 연 구 소                     |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상리리    |     |
| 특<br>화<br>작<br>목<br>시<br>험<br>장 | 성주과채류시험장   |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대천리    |     |
|                                 | 청도복숭아시험장   |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구라리    |     |
|                                 | 영양고추시험장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대천리    |     |
|                                 | 상주감시험장     |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장동리    |     |
|                                 |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     |
|                                 | 구미화훼시험장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     |
|                                 | 풍기인삼시험장    |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류 인 회  
2002. 3. 15

경상북도조례 제 호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본문 중 “3,418”을 “3,431”으로 하고, 제1호 중 “1,585”를 “1,598”로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중 경북첨단문화산업기획단 운영인력 11명은 2003.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류 인 희  
2002. 3. 15

경상북도조례 제 호

###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2]

교육위원 회기수당 지급 기준표

| 구 분  | 회의수당 지급액  |           |
|------|-----------|-----------|
|      | 회기수당      | 원격지회의출석비  |
| 교육위원 | 일 80,000원 | 일 54,300원 |

[별표4]

교육위원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단위:원)

| 구분         | 철도  | 선박<br>운임  | 항공<br>운임 | 자동차<br>운 임 | 일비<br>(1일당) | 숙박료<br>(1야당) | 식비<br>(1일당) |
|------------|-----|-----------|----------|------------|-------------|--------------|-------------|
| 의 장<br>부의장 | 1등급 | 2 등<br>정액 | 정 액      | 정 액        | 10,000      | 46,000       | 25,000      |
| 위 원        | 1등급 | 2 등<br>정액 | 정 액      | 정 액        | 10,000      | 46,000       | 25,000      |

비고 : 1.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국내여비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경상북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류 인 희  
2002. 3. 15

경상북도조례 제 호

### 경상북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3항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시 운송사업자, 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 및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정면허”라 함은 법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부터 운송할 여객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말한다.
2. “공항버스”라 함은 운행계통의 기점 또는 종점이 공항 또는 도심공항 터미널인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순환관광버스”라 함은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4. “마을버스”라 함은 자동차운행구간의 기점·종점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시내버스·농어촌버스·시외버스등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5. “공항버스 운송사업자”라 함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자”라 함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순환관광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용어를 적용한다.

**제3조(한정면허 대상자 선정)**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교통수요 및 운행구간을 조사하여 공항버스 또는 순환관광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정면허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② 한정면허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대수, 면허기간, 서비스의 수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보, 게시판등에 공고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가장 적합한 자를 면허하여야 한다.

③ 한정면허 신청자중에서 국내 정기항공 사업자, 도심 공항터미널 사업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영상태가 건실한 사업자를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제4조(마을버스 운행계통)**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마을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 마을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여야 한다.

1. 고지대마을
2. 벽지마을
3. 아파트단지
4. 산업단지
5. 학교
6. 종교단체의 소재지

**제5조(마을버스 운행노선 선정)** ① 시장·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행노선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기점·종점, 운행경로, 정류소등을 말한다)
2. 운행계통

**제6조(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 ①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차량대수는 5대이상으로 하되, 도서·벽지지역,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1대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보유차고의 면적 기준에 따른 보유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조건이 적합할 때에는 등록처리 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조정)** 공항버스, 순환관광버스 및 마을버스의 노선이 2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노선이 2이상의 시·도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면허 또는 등록처리 전에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 공항버스 및 순환관광버스의 차종은 16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이어야 하며, 승차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좌석면적을 확대 조정하거나 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차량 내·외부에 화물칸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공항버스 운송사업자, 순환 관광버스 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운수 종사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시장·군수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면허기준, 등록조건의 준수실태 및 차량의 불법개조 여부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사업의 정지, 등록의 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정활동보고서(제166회 임시회)**

2002. 4 인쇄 / 2002. 4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954-9855

FAX : 955-9185

<비매품>